

관”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본부”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서울특별시월드컵경기장건설단 건축담당관”을 “총무과장”으로,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설기획단 담당사무관”을 “총무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표창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중 “감사실”을 “감사관”으로 한다.

제6조(서울시민대상조례의 개정)서울시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예산실장·환경관리실장·교통관리실장·행정관리국장·건설국장”을 “경영기획실장·행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으로 한다.

제3조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공인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중 “총무과”를 “민원과”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 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 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 공보관”을 “행정국장, 대변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2002.11.29)의 개정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시유재산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을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기구설치조례·동조례시행규칙(2003.1.15)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명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안 제22조)

(1)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를 연 4%로 인하하는 경우

-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할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 할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게 90m^2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 (2)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200m^2 이하의 소규모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3)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를 연 6%로 인하하는 경우
 -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당해 사업목적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 나.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월별적으로 연 15%로 부과하였던 것을 기간별로 차등 인하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까지로 함(안 제28조)
-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 다. 조직개편에 의한 공유재산집의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직명 변경 (안 제7조)
- 위원장 : 행정관리국장 → 재무국장
 - 부위원장 : 재산관리과장 → 재무과장

4. 검토요지

가. 안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 현행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30%를 당해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동일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 나. 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 잡종재산 매수자가
 - 다른 지방자치단체
 - 교육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한 수급자에게 90m^2 이하 매각
 - 아파트형 공장이나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한 경우10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현행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연 4%로 즉, 1% 하향 조정하고
 - 잡종재산 매수자가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200m^2 이하의 소규모 토지
 -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가 매수한 경우10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현행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것은 연 6%로 즉, 2% 하향 조정하고
 - 잡종재산 매수자가
 - 사회복지법인
 -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수한 경우5년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현행 연 8%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케 할 수 있는 것은 연 6% 즉, 2% 하향조정 하고자 한 것으로
이상과 같은 이자요율 인하는 시중의 저금리상황과 시민의 편리를 위하여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다. 안 제23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에 특례가 있었으나 감사원 감사시 지적으로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라. 안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 현행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연체요율은 조례에서 일률적으로 연 15%로 적용하는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6항 내지 제8항에서 연체요율을 규정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마. 조례개정의 시점

-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2년 11월 29일 개정되었고 조례개정은 2003년 3월에 될 경우 그 사이의 매각대금분납금 및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문제는 부칙에서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 납부기간 도래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시점과 관련한 민원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함.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중 “영 제84조의2”를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 2”로 한다.

제7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재무국장”으로, “재산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연 8퍼센트”를 각각 “연 6퍼센트”로 하며, 동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23조의2제1항중 “사용·수익”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동조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제1항중 “제23조제3항제3호”를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의2제4항중 “세입세출예산외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또는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중 “영 제102조의4”를 “영 제102조의5”로 한다.

제39조제5항제1호중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 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그밖의 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매각대금의 분납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2년 11월 29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간이 도래하여 납부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제2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